

3. 교원업적평가기준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원의 업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적평가의 시기.대상) (2008.9.1.내용조정)

1.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교원의 승진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평가위원회를 년2회 실시하며, 평가대상자는 년1회를 초과하여 심사를 받을 수 없다.
2. 정년보장임용교수는 매4년마다 연구업적평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년보장교원 업적평가기준 세부지침은 따로 정한다.(2021.12.23.개정)
3. 교원의 업적은 현 직위기간 중의 업적만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4. 이전에 승진이나 재계약에 반영되었던 업적은 새로운 승진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3조(연구업적 인정점수) 연구업적의 인정점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1>과 같이 인정한다. (2009.3.1.수정)(2024.4.15.자구수정)(2024.12.9.개정)

<표1. 연구업적 인정점수>(2021.12.23.개정)

대항목	평가항목		평가점수	상한점수
	소항목			
논문	저명학술지	국제A	20	
		국제B	16	
		국내등재지	12	
		국내등재후보지	10	
	심사제도학술지	교외/국내	8/4	
	교내학술지		6	
단행본 및 지식 재산권	전문학술서	국외/국내	16/14	
	교과서(대학 이상) 교과부검정교과서	국외/국내	12/10	
	기타 서적 및 교양서적	국외/국내	2/2	4
	편저	국외/국내	6/4	8
	번역(1편)		10	10
	-전문학술서적		8	8
	-전문학술서적이외			
	특허	국외/국내	12/10	
	소프트웨어	국내	2	4
실용신안/디자인	국외/국내	4/2	8	
학술 활동	학술발표	국제/국내	4/2	6
	학술회의토론자, 사회자		2/1	6
	수상		4/2	6
	연구비 수혜 (중앙관리연구비에 한함)		1000만원당 1점	20
	연구보고서 (중앙관리연구비에 해당하는 연구보고서는 2배 인정)		4/2	4
	정부주관 평가 보고서(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12	20
	정부주관 대학의 국책사업 보고서(ACE,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 정부주관 평가 및 사업보고서 적용 대상 : 해당 보고서 핵심집필진(2021.12.23.개정)

1. 논문

- ① 저명학술지: 국제학술지(A)는 AHCI, SSCI, SCI 국제학술지(B)는 SCOPUS를 말하며 국내 학술지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를 말한다.(2008.3.1.수정)(2021.12.23.개정)
- ② 심사제도 학술지: 저자와 심사자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가 실시되는 학술지를 말한다. 교내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경우는 익명의 외부 심사제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삭제 (2017.02.03.)
- ④ 연구비 지급기관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학술지가 아닌 월간지 및 잡지류에 게재된 원고는 논문으로 인정치 아니한다.
- ⑤ 투고 및 심사가 국제간에 진행되는 학술지는 국외학술지에 포함된다. 다만 프로그램에 등재되거나 초록집에 수록된 건에 한하여 인정한다. (2005.3.1.단서조항삽입)
- ⑥ 삭제 (2017.02.03.)

2. 단행본 및 지식 재산권

- ① 전문학술서: 독창적이며 논문형식을 갖춘 학문적 업적물로서, 해당 전공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저서를 의미한다. 그 내용은 학술 논문과 동일하게 체계적 목차, 본문, 참고문헌, 각주를 갖춘 저서이어야 한다.(2008.3.1.추가삽입)(2017.02.03.자구수정)
- ② 교과서: 대학 수준 이상의 교과서를 말하며, 새로운 장을 추가하거나 전반적인 개정작업을 한 개정판의 경우에는 50%를 인정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저자는 50%를 인정받는다.
- ③ 기타 전문서적 및 교양서적: 연구기관이 발행한 단행본, 일반 교양서적 등을 포함한다.
- ④ 번역: 전공분야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서적의 번역을 말한다.
- ⑤ 편저에는 본인의 기존 학술 논문을 모은 저서가 포함된다. 편저의 학술적 성격이 거의 없거나, 단순한 편집물이라고 평가되는 경우는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편저의 편저자에게는 기준점수의 20%(1/n적용)를 가산하나, 편저자와 필자가 1인일 때는 제외한다. 또한, 편저에 본인의 글이 수록되지 않은 편저자에게는 기준점수의 20%만 인정한다(1/n). (2008.3.1.개정)
- ⑥ 지식재산권은 본 대학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 소프트웨어,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말하며, 해당년도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또한,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지분률만큼 인정한다. (2024. 12.9.신설)

3. 학술활동

- ① 학술발표: 학술발표, 토론회, 사회자(좌장)는 정기학술대회(춘계, 하계, 추계, 동계)에서의 논문발표 및 연구결과 발표를 말한다. 동일한 논문을 두 번이상 발표한 경우는 한 번의 발표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에 등재되었거나 초록집에 수록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2008.3.1.개정)
- ② 국제학술대회는 발표자가 3개국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발표자가 10명 이상으로 외국인 발표자가 전체 발표자의 1/3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논문 발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국제 공용어 또는 해당 외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점수산출 방식은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반드시 국제학술대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만 인정함). (2008.3.1.신설)
- ③ 수상: 국내외 학술상, 우수 논문상 수상, 그밖에 전공과 관련된 업적의 우수성으로 인한 수상을 말한다.
- ④ 연구비 수혜: 외부기관의 연구비 수혜를 말하며, 연구책임자가 공동 연구자의 연구비

할당액을 제출할 경우 공동연구 인정비율에 의거하여 업적이 인정된다. 다년과제의 경우 매년 산정한다. (2021.12.23.개정)(2024.4.15.개정)

⑤ 연구보고서: 연구사업의 결과로 연구비를 지급한 단체나 기관이 발행한 연구보고서로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연구에 한한다

4. 공동연구 인정비율

연구, 저술, 학술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의 인정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공동연구에서 책임연구원(책임저자, 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은 10%까지 추가로 가산할 수 있다.(2017.02.03.자구수정)

저자수	단독	2인	3인	4인	5인 이상
인정비율	100%	70%	50%	30%	20%

제4조(교육업적 인정점수) 교육업적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의 <표2>와 같이 점수를 인정한다. (2008.3.1.개정)(2016.4.25.내용추가)(2022.6.21.개정)

<표2. 교육업적 인정점수>

대항목	평가항목		점수	상한점수
	소항목			
강의 및 실습	강의시간	학점수 x 0.5점 다만, 실.처장의 보직교원은 책임시수를 전임교원 책임시수로 환산하여 산입한다. 강의계획서 미제출 1강좌당 -2점		
	휴강 및 보강 여부	휴강이 없으면 5점 보강하지 못한 경우 1시간당 -1점		5/연
	강의평가	평균 80%이상 15점 70이상-80%미만 8점 60이상-70%미만 6점 50이상-60%미만 4점 50%미만 0점		15/연
	외부강의평가	평균 80%이상 5점 70이상-80%미만 3점 60이상-70%미만 1점		
	대단위 강의	70명 이상 1점/건		
	교과목 및 교수방법 개발	2점/건		
	교과.비교과 연계	교과.비교과 연계 과정 반영 교과목 2점/건 (2022.6.21.개정)		5/연
	주 4일 강의 배정	1점/학기별		2/연
	성적 정정	성적 정정기간 외에 성적 정정시 과목당 -1점		
학생 지도	Office Hour 실천	주1회 2점 주2회 3점 주3회 이상 5점		5/연
	석박사 배출 학생수	박사 1명 3점 석사 1명 2점 석사연구보고서 1점		6/연
교육 역량 개선	교수법 연수	시간 수 × 0.5점 (임상 연수, 교수 연수 등 교수 개발 프로그램)		2/연

1. 강의 및 실습

① 강의시간: 가톨릭꽃동네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과목의 학점수에 한하며, 기업체의 위탁교육프로그램, 사회교육원 강의 등의 특수교육은 포함하지 않는다. 팀티칭 과목의 시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책임교수는 강의에 대한 전반적 계획 및 학생평가등 담당 강의를 총괄한다. (2021.6.22.개정)

책임교수있는 경우	책임교수	$1\text{시수} + (\text{잔여시수} \times \frac{\text{담당 주차수}}{15})$
	참여교수	$\text{잔여시수} \times \frac{\text{담당 주차수}}{15}$
책임교수 없는 경우		$\frac{\text{담당 주차수}}{15}$

연구년 기간은 평균 계산에서 제외한다. (2003.11.15 개정) (2008.3.1.수정)(2009.3.1.단서조항 추가)(2017.7.1. 수정, 자구수정)

② (교수업적인정점수의 개별통보) 총장은 교수업적 중 강의평가와 외부강의평가의 결과를 매학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교원에게 개별 통보한다. (2009.3.1.신설)

③ (외부강의평가방법) 외부강의평가는 매학기 2회 이상 3회 이하의 강의를 시청각 녹취를 보존하고 외부강의평가위원회가 시청하여 평가한다. (2009.3.1.신설)

④ (외부강의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외부강의평가위원회는 총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2명과 이사장과 이사장이 지명하는 2명의 인사로 구성하며, 이사장과 총장은 각 지명자를 1명을 평가대상 교원의 강의를 평가할 수 있는 근접한 전문분야의 인사로 한다. 외부강의평가위원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담당하며, 실무수행의 책임은 총장이 담당한다. (2009.3.1.신설)

⑤ 휴강 및 보강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 휴강이 없으면 5점을 부여하고, 학회 및 공무 등의 사유에 의하여 휴강을 할 경우에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반드시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2009.3.1.신설)(2019.2.8.개정)

⑥ 강의평가는 교무입학처에서 시행하는 수업평가 설문결과를 활용하며, 강의평가 점수의 최고 평점은 15점으로 한다. 강의평가 결과치의 점수산정은 한 학기에 학부강의 2과목, 2개 학기분을 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보직발령, 책임시수 감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학원 1과목과 학부 1과목만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1과목을 적용한다. 배점기준은 수업평가 결과 50%미만 0점, 50%이상 60%미만 4점, 60%이상 70%미만 6점, 70% 이상 80%미만 8점, 80%이상 15점으로 한다. (2009.3.1.신설)(2019.2.8.개정)

⑦ 대단위강의: 수강학생이 70명 이상인 경우 1강좌당 1점을 가산한다. (2009.3.1.수정)

⑧ 교과목 및 교수방법 개발: 교과목 및 교수방법 개발에 있어서 창의성과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과목 개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교과목 개발은 기존에 개설된 적이 없는 학제간 교과목 개발을 의미한다. 가상강의 등 새로운 교수방법 개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동일 과목당 최초 1회만 인정한다. (2008.3.1.추가삽입)(2024.12.9.자구수정)

⑨ 주 4일강의 배정: 한주 강의 배정시간이 4일이상으로 배정되면 한학기에 1점의 점수를 배정한다.

⑩ 성적 정정에 따른 감점 : 성적 정정기간 외에 성적 정정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교원의 업적 인정 점수 산정시 과목당 1점씩 감한다.(2016.4.25.개정)

⑪ 교육역량 개선 항목은 임상 연수, 교수 연수 등 교수법 관련 워크숍/포럼 및 교육에

참여하고 이수증(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시간당 0.5점을 부여하고 2점(연)까지 인정한다.
(2023.12.19.개정)

2. 학생지도

① Office Hour는 1일 2시간 이상을 재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한 보충지도 및 진로지도 등을 위한 상담시간을 말하며, 교무입학처에 제출한 상담시간표 상의 시행일수(1·2학기 평균회수)에 따라 주1회 2점, 2회 3점, 3회 이상 5점을 부여한다. (2009.3.1.신설)(2019.2.8.개정)

② 석·박사학생지도

석박사학생의 지도교수(주심교수)는 배출기준으로 인정점수의 100%, 부심교수는 인정점수의 30%를 인정한다. (2008.3.1.수정)

3. (2009.3.1.삭제)

4. (2009.3.1.삭제)

제5조(봉사업적 인정점수)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기준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 3>과 같이 점수를 인정한다. 중복점수도 인정한다. (2009.3.1.개정)

<표3. 봉사업적 인정점수>

구분	평가항목		평가 점수	상한 점수
	대항목	소항목		
교내 봉사	학교 행정	실·처장 기타보직	6/연 3/연	상위 1개 인정
	각종 위원회	교무위원회(참석회당)	0.5/회	5
		기타위원회(참석회당)	0.5/회	5
	입시	입시전형위원	2/회	
		고교대상 특강 및 입시설명회	2/회	10
		고교방문	1/회	10
	학생을 위한 활동	해외봉사인솔	5/회	
		동아리, 학생단체, 학습소모임 지도교수	3/연	5
		졸업생추수지도	3/회	5
		신입생 OT및 학년.학과MT등 학생지도행사 참여	3/회	9
	취업유치 (1건당)	0.5/건	10	
교외 봉사	대내외 학술 봉사 활동	저명학술지 회장, 편집위원장/부회장 및 편집위원/각종분과위원장 -국외 -국내	8/6/2/연 4/3/1/연	
		심사제도 학술지 회장, 편집위원장/편집위원 -국외 -국내	4/2/연 2/1/연	
	자문 활동	중앙정부 자문 및 심사활동 위원장/위원	3/2/연	4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단체 자문 및 심사활동 위원장/위원	2/1/연	
	기타	국가고시출제및심사/전국규모심사/전문영역심사	3/2/1/회	3
		수상실적(장관급이상/기타)	3/2/회	
		기금유치(장학금유치 포함)	백만원당 1점	
		기타활동	0.5/회	

1. 학교행정 및 각종 위원회 (2008.3.1.개정)

① 실·처장은 연간 6점, 기타보직은 연간 3점을 인정하며, 상위보직 한 개의 점수만 인정한다. 교무위원회와 각위원회 위원은 회의 참석 회당 각 0.5점을 인정한다. (2009.3.1.개정)

② 삭제 (2009.3.1.)

③ 삭제 (2008.3.1.)

2. 국내외 학회활동 (2008.3.1.개정)

① 저명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의 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국외의 경우 8점 국내는 4점, 부회장 및 편집위원은 국외의 경우 6점 국내는 3점, 각종분과위원장은 국외의 경우 2점 국내는 연간 1점을 인정한다. 심사제도 학술지의 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국외의 경우 4점 국내는 2점, 편집위원은 국외의 경우 2점 국내는 1점을 인정한다. (2009.3.1.개정)

② 동일 학회의 경우 상위점수 1개만 인정한다.

3. 자문활동 (2008.3.1.개정)

① 국가기관의 자문위원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위촉된 자문 및 심사위원을 말한다. (2009.3.1.개정)

② 사회단체의 자문위원은 저명한 사회단체에 전문인 자격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참여한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한다. 이에는 언론 기관 및 준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익 단체, 공적인 종교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 기관이 포함된다. 이윤 추구를 위한 기관, 정치 참여를 위한 단체, 장학재단, 전국 규모가 아닌 문화운동 기관의 장 및 자문위원급 등은 제외된다. 사회복지 기관이나 종교 기관의 경우, 전문성보다 개인의 신앙 활동이나 성직자의 사목 활동 범주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된다. 위원장은 2점, 위원은 1점을 인정한다. (2009.3.1.자구수정)

4. 기타 (2009.3.1.개정)

① 국가고시 출제에는 수능능력시험, 사법·외무·행정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시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청소년상담사 시험, 간호사 국가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의 출제위원이 이에 해당하며, 검인정교과서 심사위원도 이에 포함한다. 출제위원과 심사위원의 봉사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출제와 채점의 중복 인정) : 3점

2. 전국규모의 대회 심사 : 2점

3.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정보통신연구관리단 등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계획서 심사 : 1점

4. (2009.3.1.삭제)

② 봉사관련 수상 실적의 평가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③ 방송출연(TV, 라디오, Cable방송), 월간 방송교재 집필, 전국적 일간지 및 전국적 학술(종합)교양잡지 기고, 학술강연통역 등으로 제한하며, 회당 0.5점을 인정한다. (2009.3.1.수정)

5. 학생을 위한 활동 (2009.3.1.수정)

학생을 위한 활동은 1년 단위로 점수를 인정받는다.

① 해외봉사활동 인솔교수 5점/회

② 동아리, 학생단체, 학습소모임 지도교수 3점/연

③ 졸업생 기관방문 지도, 사회복지기관방문으로 한정하며 각 1회에 3점을 인정한다. 다만 실습 등 교과목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신입생 OT, 학년.학과 MT 3점/회

⑤ 취업유치는 학교의 취업률에 영향력 있는 건수에 따라 0.5점을 가산한다.

제6조(업적평가의 최소기준) (2008.9.1.내용조정)

1.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승진이나 재임용 계약을 하려는 해당 교원마다 각 업적별로 점수를 정한다.
2. 임용권자는 전항의 업적별 점수가 다음의 각 업적별로 정한 각 최소한도의 점수 이상을 받은 교원 중에서 교원인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재계약 또는 승진을 결정한다.
3. 2012년 9월 1일 이후 채용 교원의 승진, 재계약 기준 및 점수는 아래와 같으며 그 이전 임용자는 <별표 1>부터 <별표 5>와 같이 한다. (2012.7.1.자구수정)

2012년 9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교원의 승진.재계약 기준 및 점수

승진심사대상	최저연수	최저논문 편수	최저연구 점수	최저교육 점수	최저봉사 점수	최저점수 합
조 교 수→부교수	6년	7편	90점	120점	90점	300점
조교수재임용	4년	4편	60점	80점	60점	200점
부 교 수→교 수	5년	5편	75점	100점	75점	250점
부교수재임용	5년	5편	75점	100점	75점	250점
교수재임용	7년	3.5편	35점	140점	105점	280점
정년보장교수 (부교수→교수)	5년	7편	84점	100점	75점	259점

- 가. 산율(실제근무연구/근무기준연수)을 적용한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 · 편수 · 점수는 산율 및 인정비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 나. 삭제(2017.5.1.)
- 다. 최저연구점수 중 연당 10.0 이상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이거나 교과서 이상의 저서이어야 한다. 다만, 교수재임용 교원의 경우 연당 5.0이상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이거나 교과서 이상의 저서이어야 한다.
- 4.~6. (2009.3.1.삭제)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6조 4에 대하여는 2003년 평가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11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 이전 임용교원의 승진.재계약기준 및 점수는 다음과 같다.

승진대상	최저연수	최저논문편수	최저연구점수	최저교육및 기타점수
전임강사 → 조교수	2년	2편	10점	20점
조 교 수 → 부교수	4년	4편	20점	40점
부 교 수 → 교 수	5년	5편	25점	50점

논문 중 년당 2.5점 이상은 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어야 한다.

③(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원은 제6조(승진재계약 기준 및 점수)에 따른 업적평가를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재계약임용 자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2008년 9월 1일 시행당시 부교수인 교원은 교수 승진임용에 대하여 부칙 2008년 3월 1일 시행 ②(경과조치)에 의한 기준 및 점수를 준용한다.

승진심사대상	최저연수	최저논문편수	최저연구점수	최저교육및 기타점수
전임강사→조교수	2년	2편	10점	20점
조교수→부교수	4년	4편	20점	40점
부교수→교수	5년	5편	25점	50점

③(경과조치) 2007년 3월 1이후부터 2008년 9월 1일 이전까지 신규임용 교원의 조교수 승진에 준용하는 기준 및 점수는 다음과 같다.

승진대상	최저 연수	최저논문 편수	최저연구 점수	최저교육및 기타점수
전임강사→조교수	2년	2편	15점	20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 <표2. 교육업적 인정점수>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 <표2. 교육업적 인정점수>는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개정된 제3조는 2024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2009년 3월 1일 이후 승진·재계약 기준 및 점수

승진심사대상	최저 연수	최저논문 편수	최저연구 점수	최저교육 점수	최저봉사 점수	최저점수 합
전임강사→조교수	2년	3편	30점	40점	30점	100점
전임강사 재임용	2년	3편	30점	40점	30점	100점
조 교 수→부교수	4년	4편	60점	80점	60점	200점
조교수재임용	4년	4편	60점	80점	60점	200점
부 교 수→교 수	5년	5편	75점	100점	75점	250점
부교수재임용	5년	5편	75점	100점	75점	250점
교수재임용	7년	3.5편	35점	140점	105점	280점
정년보장교수 (부교수→교수)	5년	7편	84점	100점	75점	259점

가. 산율(실제근무연구/근무기준연수)을 적용한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편수·점수는 산율 및 인정비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삭제(2017.5.1.)

다. 최저연구점수 중 연당 10.0 이상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이거나 교과서 이상의 저서이어야 한다. 다만, 교수재임용 교원의 경우 연당 5.0이상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이거나 교과서 이상의 저서이어야 한다.

<별표 2> 2008년 9월 1일 이후 승진·재계약 기준 및 점수 삭제(2017.5.1.)

<별표 3> 2008년 3월 1일~2008년 8월 31일 임용 교원의 승진·재계약 기준 및 점수 삭제(2017.5.1.)

<별표 4> 2007년 3월 1일 이전 임용 교원의 승진·재계약기준 및 점수 삭제(2017.5.1.)

<별표 5> 2007년 3월 1일 ~ 2008년 8월 31일 신규임용 교원의 조교수 승진 기준 및 점수 삭제(2017.5.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